

감 사 보 고 서

- 심사보호국 종합감사 -

2022. 2.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부서 현황	3
III. 감사결과	5
1. 감사결과 총괄	5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8
[심사보호업무 분야]	
(1)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사건 지연처리 등 부적정(주의, 시정, 통보)	9
(2) 이의신청 사건 등 지연처리 및 사후관리 미흡(주의, 권고)	28
(3) 이첩사건 등 조사기관 이첩 지연처리 부적정(주의, 권고)	33
(4) 신고사무 비밀누설 등 예방조치 미흡(통보)	37
(5)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업무 개선 등 필요(주의, 권고, 통보) ..	41
(6) 적극적인 신고사건 처리로 공공기관 예산낭비 방지 기여(통보 [모범사례])	49
(7)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실태조사로 국고보조금 누수방지 및 공공재정 투명성 제고(통보[모범사례])	52
(8) 적시성 있는 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에 기여 (통보[모범사례])	56
[예산집행 등 공통업무 분야]	
(9) 업무 인계인수 시 문서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한 관리 부적정(통보) ...	58
(10)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주의)	62
(11)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시정, 주의)	66
(12) 출장식비 부적정 지급(시정, 주의)	69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1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심사보호국의 조직과 주요사업 수행, 예산·회계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심사보호국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주요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심사보호국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규정준수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낭비 요인 유무 확인, 지난 감사결과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감사 대상부서인 심사보호국에 2021. 10. 27. 공문을 발송하여 감사 대상 자료를 2021. 11. 5.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11. 8.부터 12. 3.까지 20일간 감사반장인 감사담당관 포함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하여, 제출된 자료와 추가 요구자료 검토, 문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부적정 및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2022. 1. 20.부터 2. 4. 까지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는 등 주요 지적·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대상 부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2022. 2. 10.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부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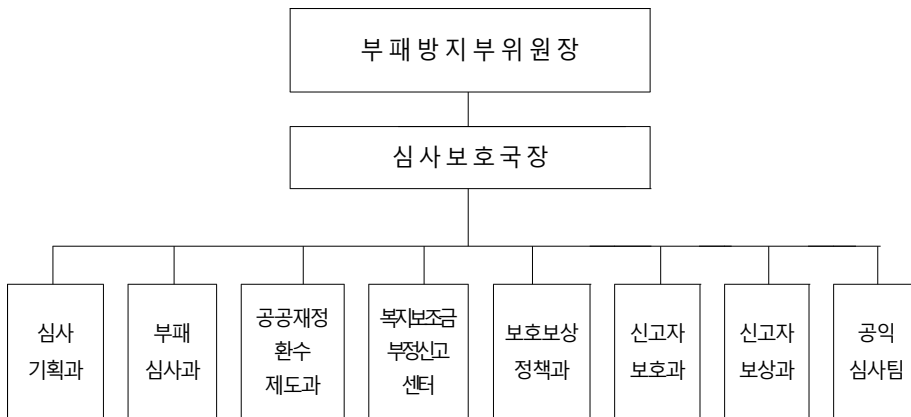
1. 임무와 기능

심사보호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공익침해행위 등의 신고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조직과 인력 현황

심사보호국은 [그림 1]과 같이 2021년 12월 말 현재 1국, 6과, 1센터, 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정원은 75명이며, 현재 인원은 7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심사보호국 조직도 및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이하	특정직
정원	75	1	2	5	5	22	32	7	1
현원	74	1	4	3	3	29	24	9	1

3. 예산 현황

심사보호국의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은 [표 1]과 같이 52억 2천5백만 원으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25억 8천2백만 원(49.4%), 공익신고제도 운영 22억 4천2백만 원(42.9%),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4억 1백만 원(7.7%) 등이 편성되어 있다.

[표 1] 2021년도 심사보호국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B)	증감	
			차이(C=B-A)	증감률(C/A)
	5,910	5,225	△685	△11.6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233	2,582	△651	△20.1
일반수용비(210-01)	30	30	-	-
사업추진비(240-01)	5	5	-	-
포상금(310-03)	3,198	2,547	△651	△20.4
공익신고제도운영	2,242	2,242	-	-
일반수용비(210-01)	70	71.2	1.2	1.7
사업추진비(240-01)	7	5.8	△1.2	△17.1
포상금(310-03)	2,165	2,165	-	-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435	401	△34	△7.8
인건비(110-03)	29	29	-	-
일반수용비(210-01)	112	121	9	8.0
임차료(210-07)	12	10	△2	△16.7
여비(220-01)	119	113	△6	△5.1
사업추진비(240-01)	8	7	△1	△12.5
포상금(310-03)	150	115	△35	△23.3
고용부담금(320-09)	5	6	1	20.0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결과, [표 2]와 같이 총 30건의 부적정 및 개선 사항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주의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3건의 모범사례는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전파·공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 2] 감사결과 현황

구분	합계	시정	주의	권고	통보	통보 (모범사례)
건수	30	3	11	6	10	3

감사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심사보호업무 분야

①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사건 지연처리 등 부적정) '19.~'21.10.까지 처리된 사건 중 ○○○○과(49.1%), ○○○○○○○○○○센터(26.9%), ○○○○팀(2.2%)이 법정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처리

신고사건 증가추세('17년 2,175건 → '21년 4,898건, 125.2% 증가)에 맞춰 조사인력('17년 33명 → '21년 33명)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 부패행위 신고대상이 아닌 사건들이 심사 부서에 배정됨으로써 조사관 업무부담 가중
⇒ 접수단계에서 해당 신고의 부패행위 신고대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통보)
- 청렴포털 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 연계기능 미흡, 일부 공공기관의 청렴포털 이용 부진 등의 사유로 사건처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건처리 현황 청렴포털 입력누락·지연입력 및 그로 인한 데이터 정확성, 완결성 부족, 신고자에 대한 사건 연장통지, 처리결과 통지 누락 등으로 민원 발생 초래
⇒ 청렴포털 시스템 연계기능 개선 및 청렴포털 이용 공공기관 확대(통보), 청렴포털 입력누락·지연입력 정보 수정(시정)

- 신고인 귀책사유로 지연되거나 전문가 자문 등으로 소용되는 기간은 사건 처리기간 산정시 제외해야 하나 이를 미이행
⇒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사유가 발생 시 처리기간에서 해당 소요기간을 제외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는 등 관리 철저(주의요구)
- 파견직원(파견 조사관 평균 근무기간 1.4년, 62.5%) 비율이 높은 심사보호국 특성 상 신규 조사관들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나 신규 조사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미 실시
⇒ 신규 조사관 대상 맞춤형 집중교육 주기적 실시, 사건처리 단계별 체크리스트, 업무매뉴얼 제공 등(통보)
- 연간 수천여건에 달하는 신고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당 조사관뿐만 아니라 부서장 등이 교차 점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청렴포털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건처리 현황, 각종 통지 누락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통보), 청렴포털에서 관련 기능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건처리 관리대장' 등 사건처리 상황 전반을 소관 부서장이 관리·점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통보)

② (이의신청 사건 등 지연처리 및 사후관리 미흡)

- '19.~'21.10. 조사기관 등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가 지연(○○○○과 23.1%, ○○○○○○○○○○센터 35.5%, ○○○○팀 25.9% 법정 처리기한 30일(부패행위 신고) 또는 60일(공익신고) 경과)
⇒ 이의신청 사건 지연되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요구)
- 위원회 종결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처리도 장기간 소요된 사례(최장 198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기한을 미규정
⇒ 위원회 신고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신고자 이의신청 사건 처리기한 마련(권고)
- 사후관리 시 조사기관에 재조사 요구한 사건 점검대상에서 누락
⇒ 사후관리 점검 시 재조사 요구 사건들이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요구)

③ (이첩사건 등 조사기관 이첩 지연처리 부적정) 위원회에서 이첩 의결된 신고사항 등이 조사기관 등에 지연 이첩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요구), 이첩 의결된 신고사항 등을 조사기관 등에 신속하게 이첩토록 「부패신고지침」에 관련 근거규정 마련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마련(권고)

- ④ (신고사무 비밀누설 등 예방조치 미흡)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고사무 비밀 준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이력을 관리하는 등 신고사무 처리과정에서 업무상 비밀 누설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통보)
- ⑤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업무 개선 등 필요) 부패행위 신고자에 치중되어 있는 포상금을 부정청탁·부정청구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 마련(권고), 포상금 지급 관련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포상금 추천 관련 접수·처리 등 현황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통보), 90일 이내 포상금 지급결정을 못하는 경우 연장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통보), 포상금 미지급 건의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권고)
- ⑥ (적극적인 신고사건 처리로 공공기관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 공공기관 소송비용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88개 공공기관에서 약 7억 6천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담당부서와 협업하여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 처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기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에 기여[통보(모범사례)]
- ⑦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실태조사로 공공재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약 298억원의 보조금 편취 의혹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담당부서와 협업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보조금 부정편취 등 예산누수를 예방하고 공공재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통보(모범사례)]
- ⑧ (적시성 있는 법령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에 기여)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비용에 대한 구조금 지급 확대 등 적시성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통보(모범사례)]

나. 예산집행 등 공통업무 분야

- ① (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인계인수 부적정) 업무 인계·인수 시 실제 인계·인수입회와 함께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서도 완료되어야 하지만, 시스템상 총 166건 중 40건(24.1%)이 미완료
- 앞으로는 인계·인수시스템 상으로 완료토록 조치(통보)
- ②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다과 구입 등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주의요구)
- ③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 가능하지만 2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출장식비와 중복 지급한 사례(62건)
- 잘못 지급한 407천원에 대해서는 환수하고(시정), 특근매식비 지급 시간 철저히 확인(주의요구)
- ④ (출장식비 부적정 지급) 출장 중 업무추진비 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거나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출장을 감액 지급해야 함에도 감액되지 않고 부적정 지급한 사례
- 부적정하게 지급된 324천원은 환수하고(시정), 출장비 정산 시 공용차량 이용여부,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주의요구)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별도 첨부자료 참조(뒷면부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의,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사건 지연처리 등 부적정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과, ○○○○과, ○○○○○○○○
○센터, ○○○○팀

조 치 부 서 심사보호국 ○○○○과, ○○○○과, ○○○○○○○○
○센터, ○○○○팀

내 용

1. 업무 개요

심사보호국 ○○○○과, ○○○○과, ○○○○○○○○○○센터, ○○○○
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
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부패행위·공익신
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6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
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 사건을 접
수한 경우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된 신고사함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 내용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
지침」(이하 ‘부패신고지침’이라 한다) 제10조제7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
고사무 운영지침」(이하 ‘부정청구신고지침’이라 한다) 제11조제7항, 「공익침
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이하 ‘공익신고지침’이라 한다) 제9조제8항에

따르면 위 기간에는 초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패신고지침」 제10조 제5항, 「부정청구신고지침」 제11조제5항
「공익신고지침」 제9조제9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사건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1.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2. 검사·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
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신고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예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 중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 ○○○○○
○○○○○센터, ○○○○팀이 처리한 신고사건의 처리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법정 처리기한인 90일(60일+30일)을 초과한 건수는 ○○○○과
1,144건(49.1%), ○○○○○○○○○○센터 620건(26.9%), ○○○○팀 223건
(2.2%)이었으며 처리기한을 경과한 이들 사건들의 평균 처리기간은 ○○○
○과 174.8일, ○○○○○○○○○○센터 122.8일, ○○○○팀 120.2일이었다.

그리고, 180일 이상 장기 소요된 사건은 ○○○○과 433건(최장 처리일
수 746일), ○○○○○○○○○○센터 41건(최장 처리일수 285일), ○○○○
팀 4건(최장 처리일수 454일)으로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표 1] 부패행위·공익신고 처리기한 경과 현황(2019년~2021년 10월)

구분	접수사건 수(A)*	처리기한 경과 사건 수(B)	처리기한 미준수율(B/A)	처리기한 경과 사건 평균 처리기간
○○○○과	2,332건	1,144건	49.1%	174.8일
○○○○○ ○○○○○센터	2,301건	620건	26.9%	122.8일
○○○○팀	10,018건	223건	2.2%	120.2일

* 신고 사건(90일)과 이의신청 사건(부패·부정청구 30일, 공익침해 60일)은 처리기한이 달라 이의신청 사건을 제외하고 산정

위 법정 처리기한을 경과한 신고 사건 가운데 수사 또는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사기관 등에 이첩된 사건은 ○○○○과 소관 211건(18.4%), ○○○○○○○○○○센터 소관 245건(39.6%), ○○○○팀 소관 57건(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패행위·공익신고 처리기한 경과 사건 처리결과(2019년~2021년 10월)

구분	계	이첩	송부	종결	진행중
○○○○과	1,144건	211건 (18.4%)	396건 (34.6%)	447건 (39.1%)	90건 (7.9%)
○○○○○ ○○○○○센터	620건	245건 (39.6%)	238건 (38.4%)	130건 (20.9%)	7건 (1.1%)
○○○○팀	223건	57건 (25.6%)	115건 (51.6%)	51건 (22.8%)	-

위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 처리가 법정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처리되고 있는 것은 [표 3], [표 4]와 같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되는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적정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한 요인으로 보인다.

[표 3] 연도별 부패행위·공익신고 접수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0월
부패행위	181건	293건	776건	789건	884건
복조보조금	390건	661건	786건	842건	735건
공익침해	1,604건	2,098건	3,264건	4,252건	2,761건

* 이의신청 사건을 포함한 접수 현황임

[표 4] 소관부서 조사인력 현황

구분	조사관 현황*		접수 건** 대비 1인당 사건 현황	
	2017년 12월	2021년 10월	2017년 12월	2021년 10월
○○○○과	8명	9명(+1)	22.6건	98.2건(↑ 335%)
○○○○○ ○○○○○센터	18명	17명(-1)	21.7건	43.2건(↑ 99%)
○○○○팀	7명***	7명	229.1건	394.4건(↑ 72%)

* 부서장을 제외한 인력, ** 이의신청 사건을 포함

*** 2017. 12.에는 ○○○○○과에서 정책업무와 공익신고 처리를 하였으며, 당시 업무분장 상 공익신고 심사업무 담당인력을 기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사건은 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에야 조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되므로, 위 소관부서는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신고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예산낭비, 공익 침해 등이 지속되어 다수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관부서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적정한 조사인력 확보 노력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여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패행위·공익신고 접수단계 심사 강화 필요

「부패신고지침」 제8조, 제8조의2 및 「부정청구신고지침」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부패행위,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등록 후 담당과장에 배정하고, 개인의 진정성 민원 등 부패신고 사건이 아니거나 부정청구 등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및 「부패신고지침」 제17조제4항 또는 「부정청구신고지침」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지침」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르면 ○○○○과장은 신고서가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나,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일반 신고사건으로 접수 후 종결할 수 있다.

◆ 「부패신고지침」 제17조제4항, 「부정청구신고지침」 제15조제4항

1. 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4. 사인간의 분쟁 해결이나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5. 감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의결 등 자체의 당부에 관한 사항
6. 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단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7. 그 밖에 법에 따른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종결"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번 감사기간 중 2021. 4. 28. ○○○○과가 처리한 사건(접수번호 2021-*** 등)을 검토한 결과, ○○○○과는 해당 신고 사건이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사항으로 신고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 신고인은 2021년 1년 동안에만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249건을 신고하였고, 249건 전부 위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종결 처리되었다.

살펴 보건대, 위 사건들은 ○○○○과에서 「부패신고지침」 제8조의2에 의거 접수단계에서 종결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249건 전부가 ○○○○과로 배정되었고 ○○○○과는 위 사건들을 조사관별로 배분하여 처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조사관별 배정사건의 증가와 함께 업무 부담을 초래하게 되었다.

부패행위·공익신고 업무처리 청렴포털로 일원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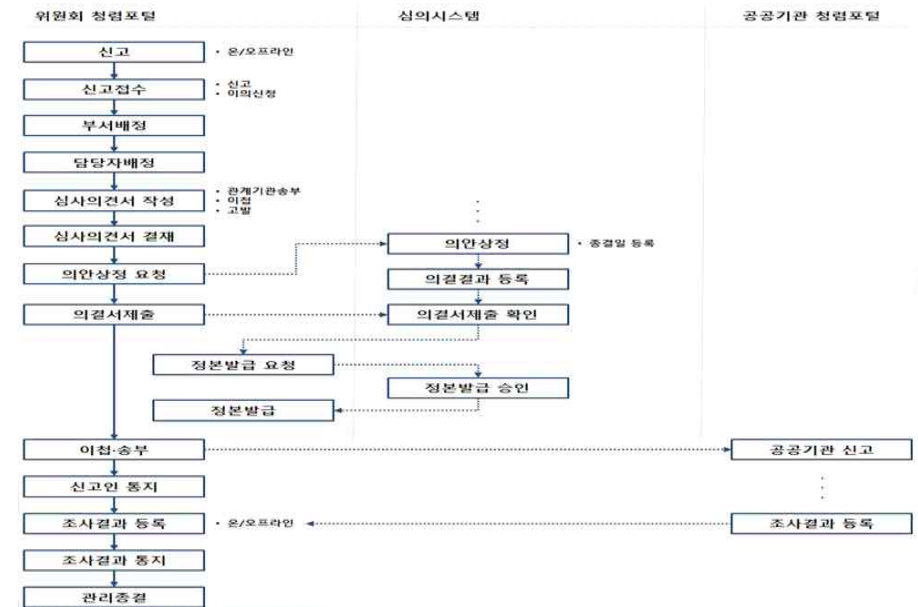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패행위·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0조의1에 따르면 부패행위·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표 6]과 같이 부패방지 종합시스템인 '청렴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부패행위·공익신고 접수부터 사건 관리종결까지 청렴포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표 6] 청렴포털 시스템 구축 추진경과

기간	단계별 주요사업	예산
'17. 5. ~ '17. 10.	청렴포털 BPR/ISP(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	4.4억원
'18. 6. ~ '19. 1.	(1단계)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간편 신고)하고, 위원회 신고사건 접수, 처리 및 안전상정 기능 등 전면 보완	42억원
'19. 6. ~ '20. 2.	(2단계) 신고를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급기관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기관이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급	32억원
'20. 6. ~ '21. 2.	(3단계) 상담내용, 신고내용, 청렴도 조사, 언론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 탑재	46억원

[그림 1] 청렴포털 신고 업무처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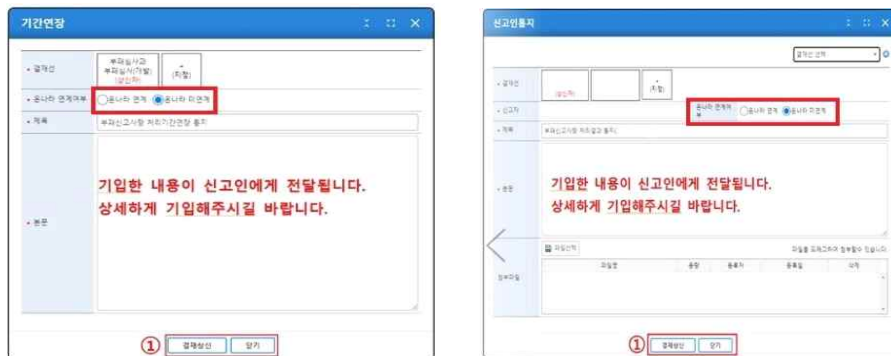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 ○○○○과, ○○○○○○○○○○센터, ○○
○○팀의 신고사건 처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 소관부서 조사관들은 [그림
2]와 같이 청렴포털 상에서 온나라 연계기능 등을 활용하여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청렴포털과 온나라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¹⁾
신고자에 대한 각종 통지(‘사건연장통지’,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조사
결과 통지’ 등) 등 사건 처리 단계별로 별도로 온나라에서 문서를 기안한 후
결제를 받은 사항을 수기로 청렴포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중의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으며, 또한 [표 7]과 같이 조사기관 등이 청렴포
털에 연계되어 있지 않거나 청렴포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조사기관
등에서 청렴포털을 활용하여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첩·송부사건’의 경우 조사기관 등에 사건 관련문서 등을 청렴포털 시스
템 상으로 송부하지 않고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청렴포털 이첩·송부 기능 이용 공공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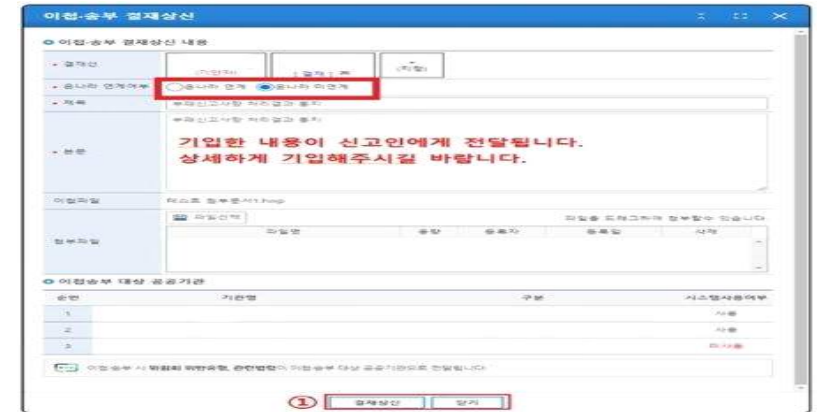
구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이용 기관 수	31(62%)	17(100%)	212(94%)	6(14%)	397(29%)
미이용 기관 수	19(38%)	0(0%)	14(6%)	36(86%)	955(71%)

* 상위기관 기준임(2021년 10월)

[그림 2] 청렴포털 온나라 연계 화면



1) ○○○○과 청렴포털 담당자에 따르면 파견조사관의 경우 파견 전 기관의 시스템 연계 문제 등으로 청렴
포털과 온나라 연계가 안 되고 있다고 함



위와 같은 비효율적인 사건처리는 사건처리 지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청렴포털 입력 지연·누락과 그로 인한 데이터 값의 완결성·정
확성 부족으로 청렴포털을 활용한 통계 관리 및 사건처리 현황 관리 곤란,
신고자에 대한 연장통지, 처리결과 통지 누락 및 조사기관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송부 누락(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고 있었다.

○ 청렴포털 데이터 입력 지연·누락 사례

- 사건처리 입력 지연 사례(표본점검) : [별표 1] 참고
- 신고자 통지 입력 누락(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소관부서	점검대상 사건 수	신고자 통지 미입력 현황
○○○○과	1,745건	249건(14.3%)
○○○○○○○○○○센터	1,688건	177건(10.5%)
○○○○팀	7,486건	85건(1.1%)

○ 처리기간 연장통지 미실시 사례(표본점검) : [별표 2] 참고

○ 조사결과 미통보 관련 민원 발생 사례

<2019부패***호>

- 2019. 12. 23. 위원회는 ○○청에 재조사 요구
- 2020. 6. 24. 서울○○○○은 위원회로 재조사 결과 통보
- 2021. 12. 10. 신고인이 ○○이 재조사 결과를 기 통보한 사실을 인지

- 2021. 12. 11. 신고인 진정민원 제기(조사결과를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통보하지 않아 신고인의 권리구제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음을 주장)
- 2022. 1. 3. 위원회는 신고인에게 재조사 결과 통지

○ 이첩·송부사건 신고서류 조사기관 등 송부 관련 민원 등 발생 사례

<2021부패**호>

- 2021. 1. 13. 부패행위 신고사건 접수
- 2021. 4. 27. 송부 결정 후 ○○시로 공문 송부(신고기록물 별송) 및 신고자 처리결과 통지
- 2021. 7월초 신고인이 ○○시에 문의한 결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서류 없다고 답변하여 신고인은 위원회 담당조사관 항의
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시 확인 결과, ○○시 담당자 교체과정에서 인계 인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
- 2021. 8. 2. ○○시로 재송부(신고기록물 별송)
- 2021. 8. 23. 신고인 진정민원 제기(위원회 조사관이 관련서류를 4월에 송부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진정)
- 2021. 9. 23. ○○시 조사결과 위원회 회신
- 2021. 9. 28.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통지

<2020복지***호>

- 2020. 7. 14. 위원회는 ○○청에 재조사 요구(공문 시행)
- 2020. 9. 9. ○○청은 위 공문 반송처리(사유: 이첩서의결서·신고기록물 등 미송부)
*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청의 행정착오로 파악
- 2020. 9. 28. ○○청은 재조사 결과 송부

처리기간 산정 시 제외기간 적극 운용할 필요

「부패신고지침」 제10조제5항, 「부정청구신고지침」 제11조제5항 및 「공익신고지침」 제9조제9항에 따르면 ‘신고인의 불출석 등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등의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신고사건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소관부서들은 내실 있는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서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이 미비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인에게 증빙자료의 보완 요구와 의견청취 등을 하여야 할 것인데, 신고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등 증거 보완 등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위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기간에서 보완 요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 ○○○○○○○○○센터, ○○○○팀이 처리한 신고사건의 처리내역을 점검한 결과, 청렴포털에 유예기간을 등록한 사건은 ○○○○과 1건, ○○○○○○○○○센터 12건, ○○○○팀 2건에 불과하였다.

파견 직원 등 신규 조사관 교육 강화 필요

심사보호국은 파견직의 비율이 전체 직원(부서장 제외)의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 ○○○○○○○○○센터, ○○○○팀의 경우 [표 8]과 같이 조사관의 절반 이상이 파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년 4개월여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조사관들의 역량강화 확보 노력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표 8] 사건처리 부서 파견직원 현황(2021년 10월)

구분	합계	○○○○과	○○○○○ ○○○○○센터	○○○○팀
전체직원수	32명	9명	16명	7명
파견직원수	20명(62.5%)	3명(33.3%)	13명(81.3%)	4명(57.1%)
평균 파견기간	1.4년	2.3년	1.2년	1.0년

따라서, 심사보호국은 파견 직원 등 신규 조사관이 위원회 신고심사 업무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차질 없이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보호국 신규 조사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규정, 사건처리 절차, 청렴포털 시스템 사용법, 비밀준수 의무, 기타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등 심사보호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심사보호국은 [표 9]와 같이 심사보호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별도의 파견 직원 등 신규 조사관 대상 맞춤형 집중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표 9] 심사보호국 자체교육 실시 현황(2021년)

연번	교육일	교육내용
----	-----	------

1	2021. 3. 26.	업무상 부정부패 수사·조사 이론
2	2021. 6. 29.	공공재정 환수 제도의 이해, 부패취약분야 실태점검 방법론
3	2021. 11. 26.	법무연수원 위탁교육(신문조서 및 수사결과 보고, 형사절차 등)

사건처리 현황 관리 강화 필요

심사보호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년 수천여건의 부패행위·공익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보호국은 많은 사건의 처리현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각종 통지 등이 누락되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건 담당 조사관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장이 신고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 사건 처리절차 전 과정을 청렴포털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차하여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청렴포털 부서장 화면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소관 부서의 처리지연 일수 별 사건 건수를 표시해 주고 있고 해당 사건 수를 클릭하면 사건 목록을 보여주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구현이 되지는 않았고²⁾(사건처리일이 60일 이상 된 사건이 있음에도 ○○○○과, ○○○○○○○○○센터, ○○○○팀 모두 처리지연 사건 수는 0으로 표시) 신고자에 대한 각종 통지여부(연장통지, 사건처리, 조사결과 통지 등)에 대한 점검·관리 기능은 청렴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았으며 신고자에 대한 사건처리 연장통지, 처리·조사결과 통지 등은 사건담당 조사관 처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렴포털 입력 데이터 값의 완결성·정확성 부족 등으로 ○○○○과, ○○○○○○○○○센터, ○○○○팀에서는 부서 서무업무 담당자가 수기로 사건처리 현황을 작성·관리하거나 온나라 문서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사건 처리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2) 부서장이 “사건처리조회” 메뉴에서 소관부서 사건처리 경과일 조회는 가능하나, 사건처리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렴포털 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자동으로 표출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3] 청렴포털 부서장 화면

성인 결재대기		신고 배정		신고 접수 결재		사건 종결검토 요청		사건 종결검토 수신		성인 진행중	
신고종결검토	담당자 지정		처리지연 (30/60/90)	결재	연건상정		사유관리			통지	
	미지정	미변경			분과위	전원위	제출	지연	위원회 미보고건		

관계부서 의견 ○○○○과는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접수단계에서 부패행위 신고대상 여부 등에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청렴포털 시스템 개선·청렴포털 연계기관 확대·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청렴포털 등록 정보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심사보호국 소관부서장이 청렴포털을 활용하여 사건처리 지연현황, 각종 통지 누락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파견직원 등 신규 조사관을 대상으로 신고심사, 신고자 보호·보상, 청렴포털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분기별로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과, ○○○○○○○○○센터는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사건처리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으며 사건처리 대장 작성, 조사관 교육 등을 통하여 사건처리 제외기간 산정, 신고자에 대한 각종 통지, 사건처리 단계별 청렴포털 입력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팀은 사건 처리기간 산정 시 제외기간을 적극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한 연장통지, 처리·조사결과 통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팀은 매년 4,000~5,000여건의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사건처리 관리대장’을 마련하는 것은 조사관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에 비하여 관리능력 향상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므로 신고자에 대한 연장통지, 처리·조사 결과통지 등은 청렴포털에서 자동으로 연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팀 조사관 1인당 한 달 평균 사건 현황은 약 30~40건(394건/12개월)으로 조사관별로 본인 사건에 대하여 사건 처리 현황, 각종 통지 누락여부 등을 점검한 후 이를 취합하여 부서장이 관리·점검하는 것이 조사업무 수행 등에 지장을 줄 정도의 업무상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다만,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에 청렴포털을 활용하여 사건처리 지연 현황, 각종 통지 누락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토록 통보), 설령 ‘사건처리 관리대장’ 마련 등 별도로 사건처리 현황을 관리·점검하는 것이 조사업무 이외의 업무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사건 처리기간 준수, 신고인에 대한 각종 통지 등은 법령에서 사건 처리과정의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수단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 ① 부패행위·공익신고 접수 시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사건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청렴포털과 온나라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원회와 조사기관간 사건이첩·서류송부·조사결과 통지 등이 청렴포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렴포털 연계기관 확대, 청렴포털 활용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부패행위·공익신고 등의 사건처리 전 과정이 청렴포털 시스템에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③ 청렴포털 시스템 상 누락되어 있거나 지연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실제 사건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하도록 하고(시정), 향후 청렴포털 시스템에 정

보 입력이 누락되거나 지연 입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 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청렴포털 시스템 등록 정보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④ 파견직 등 신규 조사관 대상 맞춤형 집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건처리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신규 조사관이 신고심사 업무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차질 없이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⑤ 부패행위·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들이 청렴포털을 활용하여 사건처리(재조사·이의신청 사건 포함) 지연 현황, 각종 통지 누락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과장, ○○○○○○○○○○센터장, ○○○○팀장은

- ① 부패행위·부정청구 등 신고·공익신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 처리기간에서 「부패신고지침」 제10조제5항, 「부정청구신고지침」 제11조제5항 및 「공익신고지침」 제9조제9항 각 호에 해당되는 소요 기간을 제외한 후 해당 사항을 청렴포털에 등록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② 청렴포털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이거나 상대 조사기관 등이 청렴포털에 연계되어 있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사항 업무는 원칙적으로 청렴포털을 통하여 처리하시되 소관부서 조사관들이 사건처리 결과를 청렴포털에 입력을 누락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연장통지 여부, 처리·조사결과 통지 여부, 신고기록물 송부(등기번호) 여부 등과 같이 청렴포털에서 관리·점검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사건처리 관리대장’을 마련하는 등 소관 부서장이 사건처리 상황 전반을 관리·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청렴포털 상 사건처리 입력 지연 사례

연번	접수번호	청렴포털 상 사건 종결일(A)	온나라 상 사건 종결일(B)	지연입력일 (A-B)
1	기재 생략	2021-05-06	2019-06-18	688일
2	기재 생략	2020-12-23	2019-04-09	624일
3	기재 생략	2020-12-18	2020-01-07	346일
4	기재 생략	2020-12-18	2020-01-07	346일
5	기재 생략	2021-07-26	2020-10-14	285일
6	기재 생략	2021-07-27	2020-10-14	284일
7	기재 생략	2020-03-10	2019-06-25	259일
8	기재 생략	2020-03-16	2019-09-04	194일
9	기재 생략	2019-11-26	2019-07-02	147일
10	기재 생략	2020-03-10	2019-10-15	147일
11	기재 생략	2019-11-26	2019-07-31	118일
12	기재 생략	2021-01-14	2020-10-21	85일
13	기재 생략	2021-01-19	2020-11-10	70일
14	기재 생략	2019-10-04	2019-07-31	65일
15	기재 생략	2021-01-14	2020-11-19	56일
16	기재 생략	2021-01-19	2020-11-25	55일
17	기재 생략	2019-09-23	2019-08-28	26일
18	기재 생략	2019-08-12	2019-07-22	21일
19	기재 생략	2020-02-24	2020-02-04	20일
20	기재 생략	2019-12-20	2019-12-03	17일
21	기재 생략	2019-12-20	2019-12-03	17일
22	기재 생략	2019-12-20	2019-12-03	17일
23	기재 생략	2019-12-20	2019-12-03	17일
24	기재 생략	2021-06-30	2021-06-17	13일
25	기재 생략	2021-06-30	2021-06-17	13일
26	기재 생략	2019-10-01	2019-09-19	12일
27	기재 생략	2020-05-11	2020-04-29	12일

28	기재 생략	2020-05-11	2020-04-29	12일
29	기재 생략	2020-05-11	2020-04-29	12일
30	기재 생략	2021-11-26	2021-11-19	7일
31	기재 생략	2020-02-25	2020-02-18	7일
32	기재 생략	2020-02-25	2020-02-18	7일
33	기재 생략	2020-02-25	2020-02-18	7일
34	기재 생략	2019-10-31	2019-10-24	7일
35	기재 생략	2019-10-31	2019-10-24	7일
36	기재 생략	2019-09-17	2019-09-10	7일
37	기재 생략	2019-11-25	2019-11-20	5일
38	기재 생략	2021-08-30	2021-08-25	5일
39	기재 생략	2019-10-14	2019-10-10	4일
40	기재 생략	2021-05-25	2021-05-21	4일

[별표 2] 처리기간 연장통지 미실시 사례

연번	소관부서	접수번호	접수일	종결일	경과일
1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4-10	2021-06-07	423
2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8-19	2021-09-27	402
3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4-28	2021-06-01	399
4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7-01	2021-07-19	383
5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5-26	2021-06-01	371
6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6-10	2021-06-15	369
7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5-24	2021-05-25	362
8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2-10	2021-02-09	365
9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2-27	2021-02-25	364
10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4-21	2021-04-13	357
11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2-19	2021-02-04	351
12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9-03	2021-12-07	460
13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1-03	2021-12-06	398
14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1-12	2021-12-23	406
15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1-23	2021-11-10	352
16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1-23	2021-11-10	352
17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1-25	2021-11-10	350
18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2-02	2021-11-10	343
19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2-02	2021-11-10	343
20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2-02	2021-11-10	343
21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2-02	2021-11-10	343
22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2-11	2021-11-10	334
23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2-14	2021-11-10	331
24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2-14	2021-11-10	331
25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2-14	2021-11-10	331
26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2-14	2021-11-10	331

27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2-23	2021-11-10	322
28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3-14	2021-03-29	746
29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9-02	2020-09-16	386
30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8-12	2020-08-24	379
31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8-12	2020-08-24	379
32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8-12	2020-08-24	379
33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2-28	2020-03-12	377
34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8-23	2021-05-25	641
35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5-21	2021-10-01	498
36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8-12	2021-11-01	443
37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12-23	2021-01-28	402
38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11-28	2020-12-29	397
39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7-02	2021-06-30	363
40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5-19	2021-05-14	359
41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8-18	2021-08-12	359
42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2-05	2021-01-29	359
43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1-11	2021-11-12	366
44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2-02	2021-11-17	350
45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2-28	2021-12-22	359
46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2-29	2021-12-07	343
47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9-02	2020-08-26	359
48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1-07-06	2021-11-12	135
49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1-02-23	2021-09-27	216
50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1-04-28	2021-12-08	224
51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1-06-28	2021-11-11	136
52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1-07-01	2021-11-30	152
53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3-31	2020-11-23	237
54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1-07-09	2021-11-18	132
55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7-26	2020-01-08	130

56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9-04	2020-01-08	126
57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1-04	2021-06-22	230
58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10-21	2021-06-07	229
59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1-03-25	2021-10-13	202
60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12-12	2020-06-29	200
61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12-12	2020-06-29	200
62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12-12	2020-06-29	200
63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1-17	2019-07-03	167
64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8-16	2020-01-16	153
65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8-19	2020-01-16	150
66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08-19	2020-01-16	150
67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0-09-23	2021-08-17	324
68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1-01-20	2021-07-09	170
69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10-28	2020-03-23	150
70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1-04-13	2021-08-26	134
71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21-02-02	2021-06-17	134
72	기재 생략	기재 생략	2019-10-16	2020-02-24	132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이의신청 사건 등 지연처리 및 사후관리 미흡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과, ○○○○과, ○○○○○○○○과, ○○○○○○○○○센터, ○○○○팀

조 치 부 서 심사보호국 ○○○○과, ○○○○과, ○○○○○○○○과, ○○○○○○○○○센터, ○○○○팀

내 용

1. 업무 개요

심사보호국 ○○○○과, ○○○○과, ○○○○○○○○○센터, ○○○○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부패행위·부정청구등·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과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석·질의, 정책개발,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부패행위·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 등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통지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조사기관 등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공익신고의 경우 조사결과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3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1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1조는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심사보호국장은 위원회 상정하거나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공익신고의 경우 ○○○○팀장은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따라서 위 소관부서들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또는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기간을 준수하는 등 재조사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조사기관에게 재조사를 요구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독려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건처리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 중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 ○○○○○○○○○○센터, ○○○○팀이 처리한 ‘조사기관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재조사 요구·이의신청 사건’의 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법정 처리기한인 30일(부패행위 신고) 또는 60일(공익신고)을 초과한 건수는 ○○○○과 27건(23.1%), ○○○○○○○○○○센터 22건(35.5%), ○○○○팀 67건(25.9%)이었으며 처리기한을 경과한 이들 사건들의 평균 처리기간은 ○○○○과 92.5일(최장 처리일수: 318일), ○○○○○○○○○○센터 54.9일(최장 처리일

수: 130일), ○○○○팀 82.9일(최장 처리일수: 133일)로 이의신청 등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표 1] 이의신청 등 사건 처리기한 경과 현황(2019년~2021년 10월)

구분	이의신청 사건 수(A)	처리기한 경과 사건 수(B)	처리기한 미준수율(B/A)	처리기한 경과 사건 평균 처리기간
○○○○과	117건	27건	23.1%	92.5일
○○○○○○○○○○○센터	62건	22건	35.5%	54.9일
○○○○팀	259건	67건	25.9%	82.9일

한편,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 ○○○○○○○○○○센터, ○○○○팀이 각각 처리한 ‘위원회 신고 처리결과(종결)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중 그 처리기간이 30일(부패행위 신고) 또는 60일(공익신고) 이상 소요된 사건은 ○○○○과 14건(처리기간 평균: 77.8일, 최장 처리일수: 198일), ○○○○○○○○○○센터 2건(처리기간 평균: 84일, 최장 처리일수: 100일), ○○○○팀 5건(처리기간 평균: 93.4일, 최장 처리일수: 102일)으로 이의신청 처리에 장기간 소요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리기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과는 조사기관 등에 이첩·송부한 신고 사건 중 이첩·송부 후 6개월 이상 조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사건들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이첩·송부사건 사후관리 현황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과, ○○○○○○○○○○센터, ○○○○팀에서 사건처리 독려 등 사후관리 점검한 결과를 취합하여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표 2]와 같이 위원회 재조사 요구의결 후 6개월 이상 조사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있음에도 위 점검대상 목록에서 누락되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였다.

[표 2] 재조사 요구 사건 사후관리 점검 누락 현황(2019년~2021년 10월)

연번	접수번호	소관부서	재조사 의결일	비고
----	------	------	---------	----

1	2019-****	○○○○팀	2019. 9. 9.	조사결과 미통보
2	2019-****	○○○○팀	2019. 9. 23.	조사결과 미통보,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독촉공문 시행(2020. 10. 15.)
3	2019-****	○○○○팀	2019. 11. 4.	조사결과 미통보
4	2019-****	○○○○팀	2020. 4. 6.	조사결과 미통보
5	2020-***	○○○○과	2020. 10. 26.	조사결과 미통보
6	2021-***	○○○○과	2021. 5. 24.	조사결과 미통보

관계부서 의견 ○○○○과, ○○○○과, ○○○○○○○○○과, ○○○○
○○○○○센터, ○○○○팀은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이
의신청 사건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 ① 위원회 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가 지연
되지 않도록 사건 처리기한을 마련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3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라며(권고)
- ② ‘이첩·송부사건 사후관리 현황 점검’ 시 조사기관 등에 재조사를 요구한
사건들이 점검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과장은

- ① 조사기관 등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고자 이의신청과 위원회 재조사 요
구 등이 지연되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② ‘이첩·송부사건 사후관리 현황 점검’ 시 조사기관 등에 재조사를 요구한
사건들이 점검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과장은 위원회 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
신청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건 처리기한을 마련하는 등 「공공
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1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센터장은 조사기관 등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고자 이의
신청과 위원회 재조사 요구 등이 지연되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
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팀장은

- ① 위원회 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가 지연
되지 않도록 사건 처리기한을 마련하는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
지침」 제21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라며(권고)
- ② 조사기관 등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고자 이의신청과 위원회 재조사 요구
등이 지연되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③ ‘이첩·송부사건 사후관리 현황 점검’ 시 조사기관 등에 재조사를 요구한
사건들이 점검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이첩사건 등 조사기관 이첩 지연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과, ○○○○과, ○○○○○○○○ ○센터, ○○○○팀
조 치 부 서	심사보호국 ○○○○과, ○○○○과, ○○○○○○○○ ○센터, ○○○○팀
내 용	

1. 업무 개요

심사보호국 ○○○○과, ○○○○과, ○○○○○○○○○○센터, ○○○○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부패행위·부정청구등·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 등에 증거자료 등과 함께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이하 ‘부패신고지침’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사무 운영지침」(이하 ‘부정청구신고지침’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관련 공문에 이첩서, 의결서,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이하 ‘공익신고지침’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 ○○○○팀장은 문서로 조사기관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첩서, 의결서, 증거서류 등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 등에 보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소관부서들은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신고사건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신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사기관 등에게 처리결과 및 관련서류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 중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 ○○○○○○○○○○센터, ○○○○팀이 처리한 사건 중 이첩 의결된 사건의 처리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이첩 의결일 이후 조사기관 등에 통보하기까지 10일 이상 소요된 사건은 ○○○○과 9건(최장 소요기간 : 16일), ○○○○○○○○○○센터 13건(최장 소요기간 : 20일), ○○○○팀 4건(최장 소요기간 : 105일)으로 위원회에서 이첩 의결된 사건이 조사기관 등에 지연되어 이첩 통보된 사례가 있었다.

[표 1] 이첩사건 조사기관 이첩 통보 10일 이상 경과 사건 현황(2019년~2021년 10월)

구분	사건 접수번호	의결일	통보일	소요기간
○○○○과	2021-*****	2021-03-15	2021-03-31	16
	2021-*****	2021-03-15	2021-03-31	16
	2021-*****	2021-03-15	2021-03-31	16
	2021-*****	2021-03-15	2021-03-31	16
	2021-*****	2021-03-15	2021-03-31	16
	2021-*****	2021-03-15	2021-03-31	16
	2021-*****	2021-03-15	2021-03-31	16
	2019-*****	2020-03-23	2020-04-02	10
	2019-*****	2020-03-23	2020-04-02	10

○○○○○ ○○○○센터	2019-*****	2019-07-15	2019-08-04	20
	2019-*****	2020-03-09	2020-03-28	19
	2019-*****	2019-10-07	2019-10-23	16
	2019-*****	2019-11-18	2019-12-04	16
	2019-*****	2019-10-07	2019-10-23	16
	2020-*****	2021-03-15	2021-03-29	14
	2019-*****	2020-02-24	2020-03-08	13
	2019-*****	2020-02-24	2020-03-07	12
	2020-*****	2020-09-21	2020-10-02	11
	2021-*****	2021-04-26	2021-05-07	11
	2021-*****	2021-04-26	2021-05-07	11
	2021-*****	2021-04-26	2021-05-07	11
○○○○팀	2020-*****	2021-06-07	2021-06-17	10
	2019-*****	2019-08-19	2019-12-02	105
	2019-*****	2019-10-21	2019-11-29	39
	2019-*****	2019-09-23	2019-10-10	17
	2020-*****	2020-06-08	2020-06-22	14

또한, 현행 「부패신고지침」에서는 「부정청구신고지침」, 「공익신고지침」 등과 달리 위원회가 이첩을 의결한 신고사항의 조사기관 등에 대한 이첩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표 2] 참고)

[표 2] 이첩 사건 등의 조사기관 통보 기한 규정 현황

부패신고지침	부정청구신고지침	공익신고지침
제20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관련 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장,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심사보호국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첩서 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	제18조(신고사항의 이첩) ①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은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관련 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이첩서 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	제19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 ○○○○팀장은 문서로 조사기관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등에 보낸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이첩서 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 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제1

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 3.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5.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영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 3.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5.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5.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	---	---

관계부서 의견 ○○○○과, ○○○○과, ○○○○○○○○○○센터, ○○○○팀은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조사기관 등에 대한 이첩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첩 의결된 사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센터장, ○○○○팀장은 위원회에서 이첩 의결된 신고사항 등이 조사기관 등에 지연되어 이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과장은 위원회에서 이첩 의결한 신고사항 등을 조사기관 등에 신속하게 이첩하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부패신고지침」 제20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신고사무 비밀누설 등 예방조치 미흡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과, ○○○○과, ○○○○○○○○
○센터, ○○○○○○과, ○○○○○과, ○○○○○과,
○○○○팀

조 치 부 서 심사보호국 ○○○○과

내 용

1. 업무 개요

심사보호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의 신고의 접수, 처리, 보호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0조, 제64조, 제87조, 제88조에 따르면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30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재정환수법」 제20조 제1항, 제28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0조제4항,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4조제4항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8조제4항에 따르면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부정청구 등의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보호보상 업무 및 관련정보의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신고사무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령 등에서 신고자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분 누출로 인한 신고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그로 인한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 위축 우려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소관부서들은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신고자 등이 제출한 자료,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등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사무 비밀 준수 등에 철저히 기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 중 심사보호국에서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부정청구 등의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보호보상 업무 및 관련정보의 전산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 ○○○○과, ○○○○○○○○○○센터, ○○○○○○과, ○○○○○과, ○○○○○과, ○○○○팀의 ‘신고사무비밀준수 서약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를 제외한 위 소관부서들은 ‘신고사무비밀 준수 서약서’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³⁾, 위 업무를 담당

3) ○○○○○○○○○○센터와 ○○○○○과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근무하고 있는 소속 직원들의 ‘신고사무비밀준수 서약서’를 제출했음

하는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들을 대상으로 심사보호국 차원에서 신고사무 비밀 준수 의무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부서 의견 ○○○○과는 관련 지침 상 서약서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서약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이고, ○○○○○과는 서약서 작성·관리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당한 감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살펴보건대,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는 자명한 것이고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0조제4항,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4조제4항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8조제4항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신고사무 비밀준수 서약서’는 위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서약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⁴⁾.

다만, ‘신고사무비밀준수 서약서’의 작성·관리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적 의무 부과 사항도 아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별도의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신고사무 비밀누설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소관부서들이 ‘신고사무비밀준수 서약서’ 관련 법령·지침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고사무 비밀준수를 위한 예방 조치 등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심사보호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고사무 비밀 준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이력을 관리하는 등 신고사무 처리과정에서 업무상 비밀 누설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헌법재판소 판례 98헌마425(2002.4.25.) 등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의, 권고 및 통보

제 목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업무 개선 등 필요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과

조 치 부 서 심사보호국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부패신고자⁵⁾ 및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가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자에게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1]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⁶⁾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1. 부패행위자에게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1. 공익침해행위자에게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이하 ‘부패신고 포상금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38조와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이하 ‘공익신고 포상금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패신고의 경우 포상금 추천 등이 있는 때부터, 공익신고의 경우 포상금 추천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하고, 기간 내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기관등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제40조와 「공익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제3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포상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의 다양성 부족

5)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패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등 신고자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자를 포함함

6) 부정청탁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는 「청탁금지법」 제15조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부정청구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8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사유와 그 내용이 동일함

최근 3년간 부패신고 포상금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집행률은 '20년을 제외하면 100%를 크게 상회하는 반면, 부정청탁 등 신고 포상금 집행률은 매년 40%⁷⁾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금액 또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부정청구등 신고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20년부터 매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금액은 '20년부터 '21년 10월 현재까지 0원⁸⁾으로 확인되는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이 '20년 1월임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3년간 부패신고 포상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19년			'20년			'21년(10월말 기준)		
	편성	집행	집행률	편성	집행	집행률	편성	집행	집행률
부패신고	147,000	137,500	94	186,000	28,000	15	186,000	113,000	61
부패행위 신고	80,000	112,500	141	80,000	8,000	10	80,000	105,000	131
부정청탁등 신고	67,000	25,000	37	56,000 (보포상금)	20,000	36	56,000 (보포상금)	8,000	14
부정청구등 신고 ⁹⁾	-	-	-	50,000	0	0	50,000	0	0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7) 부정청탁등 위반 신고자 포상금 예산은 '20년부터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내 310-03목(포상금)에 포상금과 보상금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편성하고 있음. 보상금 집행액을 포함하면 '20년은 47.2%, '21년(10월말 기준)은 14.3%임
8) '20년 포상금 예산 50,000원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전액 전용하였음
9) 「공공재정환수법」이 '20년 1월 시행되어 '19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또한, 감사 대상기간('19년 10월부터 '21년 10월) 포상금 건별 지급사유를 확인한 결과 지급사유가 비교적 다양한 공익신고와 달리 부패신고의 경우 '신분상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12건(70.6%)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금전적 처분¹⁰⁾' 4건(23.5%),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1건(5.9%),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방지' 0건(0%), '그 밖에 보상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1건(5.9%)에 불과하였다.

[표3] 포상금 건별 지급사유

구분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사유(17건 ¹¹⁾)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26건)
2019년	신분상 처분 5건	신분상 처분 1건 특정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 3건 금전적 처분 4건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기여 1건
2020년	신분상 처분 4건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1건 금전적 처분 2건	신분상 처분 1건 특정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 6건 금전적 처분 4건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기여 1건
2021년 (10월말 기준)	신분상 처분 3건 금전적 처분 2건 그 밖에 보상위가 인정하는 경우 1건	신분상 처분 2건 특정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 1건 금전적 처분 1건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기여 1건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발생하는 부패신고 포상금 수요와 「부패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상의 여러 가지 포상금 지급사유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포상금 지급대상 발굴에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10) '19.10.15.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에서 '금전적 처분'은 삭제됨.
11) '20년에 '신분상 처분'과 '금전적 처분'에 모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건이 1건 존재함

나. 청렴포털을 통한 포상금 추천 건 접수·처리 등 현황 관리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에서는 「부패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제7조와 「공익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제22조에 근거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조사기관등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고 있으며, 조사기관등은 공문 등을 통해 추천 대상자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접수부터 결과통지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보상금 신청 건과는 달리, 포상금 추천 건은 담당자 검토를 거쳐 보상위원회에 상정될 건 등 일부만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이외의 건은 등록 없이 별도의 엑셀에 기록·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감사 대상기간('19년 10월부터 '21년 10월) 엑셀로 작성된 포상금 추천 대상자 관리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20년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자료 일부는 추천일, 처리결과, 통지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알 수가 없었다.

[그림1] 포상금 추천 대상자 관리대장(일부 발췌)

연번	성명	신고일자	신고내용	위반법률	처분 등 내용					비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제도개선	금전적 처분	사회재난에 방 등				
1		2019-01-19		의료법 등	기소의견 송치 1명					내부 확인 필요			
2		2018-11-19		의료법, 약 사법 등	기소의견 송치 2명					내부 확인 필요			
3		2019-05-27		신원자원 조성법		영업정지 3개 월				내부	2,000,000	자료요청	
4		2019-05-30		건설기술 진흥법	기소의견 송치 1명					외부 확인 필요			
5		2019-08-16		전기 및 생 활용품 안		수거파기 명령				외부 불가능			
6		2019-09-04		의료법	고발 1명	의료기관 업무 정지 3개월				내부	4,000,000	자료요청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하지만, 보상금 지급 건과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 건도 「부패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제40조와 「공익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제36조에 따라 추천일 등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통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고 연장통지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렴포털을 통해 접수·처리 등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포상금 관련 통지업무 미흡

감사 대상기간('19년 10월부터 '21년 10월) 총 43건의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건 중 지급결정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8건을 대상으로 「부패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제38조와 「공익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제36조에 따른 연장통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8건 모두 신청인 또는 추천기관에 연장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 지급결정 기간 90일 초과 포상금 지급현황

연번	신고유형	추천일	지급결정일	지급결정 기간	연장통지 여부
1	공익	2019-07-19	2019-10-21	95일	X
2	부패	2019-03-18	2019-12-23	281일	X
3	부패	2019-05-07	2019-12-23	231일	X
4	공익	2019-10-28	2020-02-24	120일	X
5	공익	2019-04-04	2020-12-21	628일	X
6	부패	2020-10-23	2021-01-25	95일	X
7	공익	2020-09-14	2021-04-26	225일	X
8	공익	2020-11-20	2021-07-19	242일	X

(자료: ○○○○○과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부패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제7조, 제40조와 「공익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제22조, 제3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대상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규정이 없고 실제로도 통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¹²⁾

포상금 지급신청은 대상자가 직접 할 수 없고 조사기관등의 추천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조사기관등에서 추천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운영지침에 규정¹³⁾하고 있어 사실상 대상자가 직접 신청한 것과 다름이 없어 보이는바,

행정기관이 마련한 규정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안에 대해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대상자를 추천한 조사기관등도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추천한 기관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¹⁴⁾

관계부서 의견 ○○○○○과는 조사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포상금 지급대상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포상금 지급 처리기간 관리 및 종결 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업무 처리방식 개선 및 지침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외에도 부정청탁·부정청구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② 포상금 지급 관련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연장통지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추천 건의 접수처리 등 현황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추천일 등부터 9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신청인 또는 추천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및 「공익신고 포상금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12) ○○○○○과에서는 공문으로 조사기관등에 포상금 대상자 추천요청 시 유형별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요령」을 첨부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 통지한다고 안내하고 있음

13) 「부패행위 포상금 운영지침」 제7조 및 「공익신고 포상금 운영지침」 제22조

14) ○○○○○과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그 결과를 추천기관에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임

국 민 권 의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적극적인 신고사건 처리로 공공기관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과

모 범 부 서 심사보호국 ○○○○과

모 범 내 용

심사보호국 ○○○○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2제4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경위 및 취지 확인, 신고사항 처리와 위원회 안전 상정, 신고사항 조사기관 이첩·송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는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자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개월에 걸쳐 중앙부처·자치단체를 비롯한 대학·연구원·공단 등 총 139개의 공공기관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총 96개 공공기관에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에 조사결과를 이첩하였고 감독기관은 해당 기관들을 조사해 현재까지 88개 기관에서 총 약 7억 6천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소송비용 업무담당 공무원 82명을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

[표 1] 공공기관 소송비용 미회수 사건 조사결과

구 분	적발기관(개)	회수진행비용(원)	신분상조치(명)
-----	---------	-----------	----------

중앙부처	43	281,584,336	28
광역자치단체	33	116,357,478	11
지방자치단체	15	346,615,335	33
기초자치단체	5	15,464,994	10
계	96	760,022,143	82

※ 조사대상기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총139개

또한, ○○○○과는 금번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 2]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여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과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 ○○과는 2021년 10월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각급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소송비용 미회수 사례

【 주요 사례 】

- A공공기관은 승소하고 2014. 3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다 2019. 1월 패소자가 폐업한 시점에 9백여만원의 소송비용 미회수를 확정함
- B지자체는 승소하고 2017. 1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후 소송자료가 분실되었다는 명목으로 3백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미회수함
- C지자체는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금액(1,430여만원) 일부를 소송대리인 개인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순한 업무착오로 보아 별도의 조치를 아니함
- D지자체는 승소하고도 지자체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해당부서의 업무과중으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근거규정 없이 임의로 면제 처리
- E공공기관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우호적인 협의 유도 및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12건의 소송비용 3천여만원을 미회수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 ○○○○과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소송비용
미회수 신고사건 조사’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
사례)**]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및 공공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센터

모 범 부 서 심사보호국 ○○○○○○○○○○센터

모 범 내 용

심사보호국 ○○○○○○○○○○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등 관련 신고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금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함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2020. 1. 1.)하여 부정이익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부정수익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운영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센터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약 298억 원의 보조금 편취 의혹을
확인하였다.

○○○○○○○○○센터에서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사업 추진과정
에서 관련 단체 및 제작사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자부담금 대납 및
과다 소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의 중합을 인지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등을 위해 주요 광역·기초 지자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센터는 [표 1]과 같은 위법행위 의혹을 확인하였으며, 확인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표 1]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의혹 관련 주요 확인사항

①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의 표준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품목별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정도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하고,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② 제작사들이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10%)을 대납 또는 후납 처리하는 등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 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
③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간 유착 관계 의혹
④ 협회는 수억 원의 회비를 제작사로부터 받고, 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제작사로부터 수수한 의혹

또한, ○○○○○○○○○○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과로 인계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 이 [표 2] 와 같이 2021. 2. 8. 의결되었다.

[표 2]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배출가스저감장치 안내기관 명확화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부착지원센터’ 가 관련없음을 적시하여 차주의 혼란 해소 → ‘배출가스보조금지침’ (제3자 약정금지) 개정	환경부
	- 협회가 대행 중인 업무 비용에 관련된 규정 마련 - 협회가 장치부착 건수에 따라 제작사로부터 받는 연동 회비를 제한하여 불투명한 비용 수수 관행 근절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 ‘배출가스보조금지침’ 개정	환경부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실효성 강화	- 각 제작사의 연도별 장치 판매개수매출이익 비교검증으로 장치가격 재검토 → 적정원가 재산정 후 차주 자기부담금 재산정 및 환급, 사후검증방안 마련	환경부
	- 중고차 매매계약 전 차주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현재 차주의 피해 예방 →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및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자동차 관련 정보 확대	국토교통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진행과정 공개	- 차주의 장치제작사 및 공업사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민 불편 해소 → 장치부착 안내문에 기재도리 제작사 및 인근 공업사 정보 제공양식 마련, ‘배출가스보조금지침’ 에 반영	환경부
	- 장치부착 진행상황 상시 확인 체계 마련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선 또는 SNS로 진행 상황 안내 시 안내양식을 마련하여 ‘배출가스보조금지침’ 에 반영	환경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관리 강화	- 장치부착 완료시점에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문 마련, ‘배출가스보조금지침’ 에 반영	환경부

정부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여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상황에서 ○○○○○○○○○○센터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의혹 확인 및 제도개선 연계는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및 누수 재정 환수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더 나아가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자, 수급자에게 공공의 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함으로써, ‘나랏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하고, 공공재정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 ○○○○○○○○○○센터에서 추진한 매연 저감장치 보조사업 실태조사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 (모범사례)]**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적시성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에 기여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과

모 범 부 서 심사보호국 ○○○○○○○○과

모 범 내 용

심사보호국 ○○○○○○○○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2제6항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제도의 운영, 법제 연구·개선,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은밀하고 지능화되어가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등의 신고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부패행위·공익침해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 등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또한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과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 확대,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표 1] 참고)

[표 1]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기 준	개 선
책임 감면	• 징계권자만 자체 책임감면 가능	• (추가) 행정처분권자도 책임감면 가능 • (신설) 권익위가 처분권자에게 신고자에 대한 징계행정처분 감면 요구 가능
구조금	•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 지원	• (확대)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 지원 • (신설) 긴급구조금 제도 신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도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하고, 보상금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및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가산금, 부담금 등이 부과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사유도 확대하였다.([표 2] 참고)

[표 2]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

구 분	기 준	확 대
보상금 기준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환수 또는 판결
포상금 기준	•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구조금	•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 지원	• (확대)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 지원

그 결과,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령 상 사각지대의 해소와 함께 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보호·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돼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 ○○○○○○과에서 추진한 「법령 개정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 (모범사례)**]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업무 인계·인수 시 문서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한 관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심사보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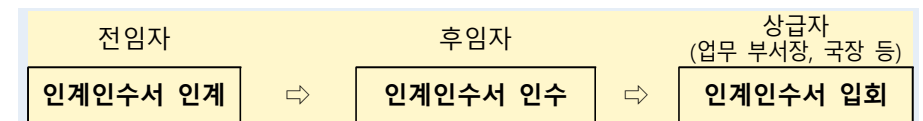
조 치 부 서 심사보호국

내 용

1. 업무 개요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바뀔 때에는 해당 업무를 작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전임자는 인계서를 작성하고, 후임자는 인계서의 내용을 확인 후 인수하며, 인계·인수자의 상급자(부서장, 국장 등)는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1] 업무 인계·인수 흐름도



감사대상 기간(2019.10.~2021.10.) 심사보호국 6개 과, ○○○○○○○○○ 센터, ○○○○팀 등 8개 부서에서는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총 166건의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었다. 인계인수서의 내용에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계·인수하는 업무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할 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아울러, 서식에 따라 인계자·인수자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입회를 확인해야 한다.

[그림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해당부분 발췌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낱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업무 인계·인수 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과 같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와 입회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19.10.~2021.10.) 동안 인계인수된 건에 대해 인계인수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 있었다.

[그림 3] 인계인수시스템 화면

[그림 4] 인수·인계·입회 완료 화면 예시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상태
박 모	양		입회완료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인계자	박
인수자	모
입회자	양

[그림 5] 인수·입회 미결상태 화면 예시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상태
안 박	김		인수요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인계자	안
인수자	
입회자	

[그림 6] 입회 미결상태 화면 예시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상태
이 최	김		입회요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인계자	이
인수자	최
입회자	

인계인수시스템상 인계·인수·입회가 완결되지 않은 건수는 총 166건 중 40건(24.1%)으로, 인수15)단계 미결 15건, 입회단계 미결 17건, 기타 사유로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8건이 있었다.

15) 인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입회가 진행될 수 없음

[표 1] 시스템상 감사대상 기간(2019.10.~2021.10.) 인계·인수·입회 현황

부서별	인계인수 건수	입회 원료 건수	소계	인수미결 건수	입회미결 건수	기타 (수기 작성 등)
합계	166 (100%)	126 (75.9%)	40 (24.1%)	15	17	8
○○○○과	23	18	5	-	4	1
○○○○과	22	13	9	2	3	4
○○○○○○○○과	7	5	2	1	1	-
○○○○○○○○○센터	47	43	4	3	1	-
○○○○○○과	13	10	3	1	1	1
○○○○○○과	11	7	4	2	-	2
○○○○○○과	18	14	4	-	4	-
○○○○팀	25	16	9	6	3	-

(자료 :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 심사보호국 인계인수 확인 결과)

관계부서 의견 심사보호국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각 부서에 전파하여 직원전보 등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 시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센터장, ○○○○○○○과장, ○○○○○과장, ○○○○○과장, ○○○○○팀장은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 변경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입회할 때는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입회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의요구

제 목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소 관 부 서 ○○○○과, ○○○○○○○○○과, ○○○○○○○○○○센터, ○○○○○○○과, ○○○○○과, ○○○○○과

조 치 부 서 ○○○○과, ○○○○○○○○○과, ○○○○○○○○○○센터, ○○○○○○○과, ○○○○○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심사보호국 각 부서에서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부서운영 및 소관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 집행지침 등”이라 한다)에 따르면 일반수용비(210-01목)는 사무용품의 구입과 인쇄비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비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및 사용료 등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는 임차료(210-07목)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와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내부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업무추진비(240목)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Ⅲ. 목별 지침)

1. 일반수용비(210-01목)

1. 적용대상

-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초빙강사료 등

4. 임차료(210-07목)

1. 적용대상

- ☐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Ⅲ. 비목별 지침)

4. 업무추진비(240목)

4-1. 사업추진비(240-01)

- 가. 적용범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4-2. 관서업무추진비(240-02)

- 가. 적용범위: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19.10.~2021.10.)의 예산과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6개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행사 또는 내부직원 간담회·회의 등 관서업무수행 목적의 다과와 음식을 일반수용비로 구입하거나, 물품 등의 임차료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등 총 59건, 4,187,150원을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1]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현황

부서명	건수	집행액	집행 예산과목	적정 예산과목
○○○○과	23건	1,995,430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과	1건	52,000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1건	385,000원	일반수용비	임차료
○○○○○○○○센터	1건	62,850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과	10건	904,570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과	1건	15,000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과	22건	772,300원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합계	59건	4,187,150원	-	-

(자료: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등 확인 결과 재구성)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할 다과나 음식을 일반수용비로 잘못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집행 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향후 교육을 통해 정확한 규정 숙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서 의견 ○○○○○○○○○과는 향후 집행 담당자가 예산 집행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임차료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1건(385,000원)에 대해, ○○○○○○○ 권역별 설명회('20. 6. 18.)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대여하였으며, 열화상 카메라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포함한 측정 용역으로 판단하여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는 의견이다.

소규모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의 경우 일반수용비 집행이 가능하나, 관련 품의서 및 견적서상 열화상 카메라 '대여' 만 기재되어 있고 공임비, 용역비 등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세부지침」 등에 따르면,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는 임차료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에 대해 임차료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므로 ○○○○○○○○○과 ○○○과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과, ○○○○○○○○○○센터, ○○○○○○○과, ○○○○○과, ○○○○○과
○○과는 이견 없이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 및 전파하고,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센터장,
○○○○○○○○과장, ○○○○○과장, ○○○○○과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
소 관 부 서	○○○○과, ○○○○○○○○○○센터, ○○○○○과, ○○○○과, ○○○○팀
조 치 부 서	○○○○과, ○○○○○○○○○○센터, ○○○○○과, ○○○○과, ○○○○팀
내 용	

1. 업무 개요

심사보호국 각 부서에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초과
근무 2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에게 지급하되, 정규근무시간(09시~18시) 중에는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 등으로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예산의 중복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1-5. 특근매식비(210-05목))

가. 지급대상자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19.10.~2021.10.)의 특근매식비 지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5개 부서에서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자 및 출장식비 지급자 등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등 총 62건, 407,000원의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1]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내역

부서명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사유
○○○○과	12건	77,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6건 · 출장식비 중복 지급 4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2건
○○○○○○○○○○센터	21건	131,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11건 · 출장식비 중복 지급 6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3건 · 저녁 특정업무경비 사용 1건
○○○○○○과	23건	160,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21건 · 출장식비 중복 지급 2건
○○○○○○과	3건	18,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1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2건
○○○○팀	3건	21,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2건 · 출장식비 중복 지급 1건
계	62건	407,000원	

(자료: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및 e사람 시스템 확인 결과 재구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연근무 등에 따라 초과근무 2시간을 미충족한 건이 41건(66.1%)으로 가장 많고, 출장식비 중복 지급 13건(21%),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¹⁶⁾ 7건(11.3%), 저녁 특정업무경비 사용 1건(1.6%) 순으로 나타났다.

특근매식비 지급 시 대상자의 출퇴근 기록 및 유연근무 실시내역, 근무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상부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과, ○○○○○○○○○○센터, ○○○○○과, ○○○○○과, ○○○○팀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잘못 지급된 특근매식비를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센터장, ○○○○○과장, ○○○○○과장, ○○○○팀장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특근매식비를 반납 조치하고(시정),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2시간 충족 여부와 출장식비 지급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6) 유연근무 개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출퇴근 시간이 정규근무시간(09시~18시)에 해당하는 경우으로써 이는 특근매식비 집행 제외 대상임. 예를 들어, 07시부터 15시까지 유연근무 후 17시에 퇴근지정 하였을 시 유연근무 개시 후 2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정규근무시간 18시 이전에 해당하므로 특근매식비 집행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소 관 부 서 ○○○○과, ○○○○과, ○○○○○○○○○○센터, ○○○○과, ○○○○팀

조 치 부 서 ○○○○과, ○○○○과, ○○○○○○○○○○센터, ○○○○과, ○○○○팀

내 용

1. 업무 개요

심사보호국 각 부서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1 .가에서는 위 규정상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란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1 .가 조정사유)

- 1)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출장 중 업무추진비 또는 특정업무경비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출장식비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19.10.~2021.10.) 출장일비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센터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출장일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지 않은 총 3건, 70,000원의 출장일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출장식비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5개 부서에서 출장 중 업무추진비 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였음에도 출장식비를 감액 지급하지 않은 총 38건, 254,750원의 출장식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1] 출장일비 부적정 지급 내역

부서명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사유
○○○○○○○○○센터	3건	70,000원	· 공용차량 이용 3건

(자료: 여비지급내역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확인 결과 재구성)

[표 2] 출장식비 부적정 지급 내역

부서명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사유
○○○○과	3건	21,650원	· 업무추진비 사용 3건
○○○○과	2건	13,320원	· 업무추진비 사용 2건

○○○○○○○○○○센터	26건	173,160원	· 특정업무경비 사용 24건 · 업무추진비 사용 2건
○○○○○과	2건	13,320원	· 특정업무경비 사용 2건
○○○○팀	5건	33,300원	· 특정업무경비 사용 4건 · 업무추진비 사용 1건
계	38건	254,750원	

(자료: 여비지급내역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확인 결과 재구성)

출장여비 정산 시 공용차량 이용여부 및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상부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과, ○○○○과, ○○○○○○○○○센터, ○○○○○과, ○○○○팀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여비를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센터장, ○○○○○과장, ○○○○팀장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여비를 반납 조치하고(시정),

공용차량 이용여부 및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